

보도협조일 : 07.7.25(수) 14:30이후 자료배포일 : 07. 7. 25 (수)

담당부서 : 평가제도국

담당자 : 정대진 과장(02-2100-8236/7)

「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대책」 발표

- ◆ 지방기업에 대해 법인세·건강보험료 차등 감면
- ◆ 자연계 석·박사의 군복무 대체근무, 지방기업에 우선 배정
- ◆ 공공임대산업단지 향후 10년간 330만㎡ 공급
- ◆ 지방이전기업 종업원에 대한 아파트 특별분양제도 도입
- ◆ 지방국립대학병원, 암·심뇌혈관계 질환 전문병원으로 특화발전

1. 2단계 균형발전정책 발표

- 정부는 7.25일(수) 14:30 진주산업대학(경남 진주 소재)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각계 인사 1,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,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 선포식을 개최

2. 2단계 정책 추진배경

- 참여정부는 출범 후 강력한 균형발전 의지를 토대로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, 공공기관(178개) 이전 및 10개 혁신도시 건설, 기업도시(6개) 건설 등 공공부문 중심의 균형발전정책을 추진
 - 올해 행복도시 기공식(7.20), 혁신도시 기공식(9월부터) 등 차질 없이 진행중
 - 다만, 그 실질적인 효과는 2012년 이후부터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

□ 따라서,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추동력을 배가하고 성과를 앞당겨 달성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하여 2단계 균형발전정책을 선포함

< 2단계 균형발전정책 수립 경위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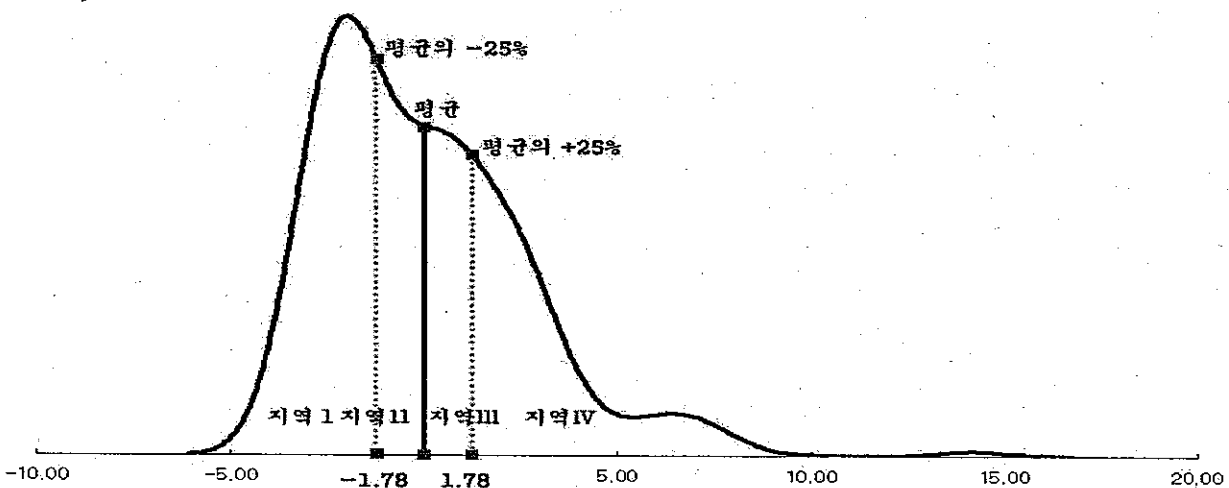
- 노무현 대통령, 2단계 구상 최초 제안(목포대, 06.11.29)
- 2단계 균형발전 구상 대국민 보고(안동, 07.2.7)
- 정부내 협의 및 지자체·경제계 의견수렴(07.2~6월)
-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·의결(07.7.24)

3. 2단계 정책의 핵심내용

□ 전국을 지역발전정도에 따라 분류, 차등지원기준으로 활용

○ 인구·경제력 등 5대 부문 14개 지표의 통계치를 종합평가하여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를 4개 그룹으로 분류

* 14개지표 : 인구부문(3개), 산업·경제부문(4개), 재정부문(3개)
복지부문(2개), 인프라부문(2개)



* 외국의 지역분류 및 차등인센티브 사례는 별첨

□ 2단계 균형발전정책 내용은 2대 부문(기업대책·사람대책), 14개 과제로 구성

부 문	14개 과제
기업대책	①지방기업에 법인세 차등감면
	②지방기업 인력난 해소
	③산업용지 공급 확대
	④경제자유구역·자유무역지역 추가지정
	⑤지방이전기업에 대한 도시개발권 부여 확대
	⑥대기업의 지방투자시 출총제 예외인정
	⑦지방이전·투자기업에 맞춤형 종합서비스 제공
사람대책	①지방기업 종업원에 고품질주택 공급
	②지방 초·중등교육 수월성 제고
	③경쟁력있는 지방대학 육성
	④선진형 의료서비스 공급
	⑤지역선도도시내 교육·문화·의료·복지인프라 확충
	⑥지방의 사회개발투자 확대
	⑦지방재정 배분시 낙후도 반영 확대

<1> 기업 대책 :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조성

① 지방기업에 대한 법인세 차등 감면

○ 전국을 지역발전 정도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법인세를 차등 감면하고, 세제 지원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최저한세율 적용 배제

- 중소기업 : 이전·창업·기존기업 모두 기간 제한없이 지역발전정도에 따라 차등감면
- 대기업 : 이전기업은 15년(10년 : 중소기업 수준, 이후 5년 : 중소기업의 1/2수준 감면)
창업기업은 10년(7년 : 중소기업 수준, 이후 3년 : 중소기업의 1/2수준 감면)

	현행	개선
중소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창업 : 4년간 50% 감면 • 이전 : 5년간 100%, 그후 2년 50% 감면 • 운영 :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(수도권 10~20%, 지방 5~30%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일률적으로 기간 제한없이 차등감면 지역 I : 70% 지역 II : 50% 지역 III : 30% 지역 IV : 0%
대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이전시 최초 5년 100%, 이후 2년 50%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이전시(수도권→지역 I, II, III) 최초 10년 70%·50%·30% 감면 이후 5년 35%·25%·15% 감면 • 창업시 최초 7년 70%·50%·30% 감면 이후 3년 35%·25%·15% 감면

※ 지역 I 은 가장 낙후, 지역 IV는 가장 발전한 지역임을 의미

② 지방기업의 인력난 해소

- 지방중소기업의 기술 전문인력 확보 어려움 해소를 위해
 - 석·박사급 미취업자와 산업체 퇴직 기술개발 유경험자 등 기술 전문인력 채용비용 보조
 - 자연계 석·박사 연구요원의 군복무 대체근무를 위한 전문연구요원을 지방기업에 배정 확대(현재 30%→50%)
- 지방기업의 수요에 맞춘 계약형 학과 설치·지원 등 주문형 인력양성제도에 대한 지원 확충
- 지방기업이 신규투자로 고용을 창출할 경우, 정부가 고용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새로이 도입

③ 지방기업에 대한 산업용지 공급 확대

- 산업용지 애로지역에 10년간 총 330만㎡ 규모(2008~2017년, 연간 평균 33만㎡ 조성)의 공공임대산업단지 조성
- 산업용지 공급특례제도(농지·산지전용 등 입지규제심사를 신속처리(Fast Track)하는 제도)를 도입
 - 국무총리 산하에 「이전기업용지 애로해소위원회」(가칭)를 설치하여 관련 인허가 규제심사를 일괄처리

④ 지방이전기업에 대하여 도시개발권 부여 확대

- 지방이전기업의 지역투자·고용창출 규모에 따라 상업적 도시개발권 차등 부여
 - 고용규모에 따라 도시개발규모를 차등화(330만㎡→100만㎡) 하여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

⑤ 「지방투자종합지원센터」를 개설하여 지방이전/투자기업에 대한 맞춤형 One-Stop 행정서비스 제공

⑥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역을 추가지정하여 지방경제 활성화 및 외국인투자 유치 촉진

⑦ 대기업이 지방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출총제 예외 인정

* 현재 국회계류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기 반영

<2> 사람 대책 : 살기좋은 생활환경 조성

① 지방기업 종업원에 대한 주택공급 지원

- 청약통장가입·주택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민영주택 건설량의 10% 범위 내에서 지방이전기업 종업원에게 주택 특별공급
- 지방이전기업이 국민주택 규모(85㎡이하)의 사원용 임대주택을 20호 이상 건설시 국민주택기금의 저리융자 지원

▶ 전용면적 60㎡이하 : 호당 55백만원 한도, 연리 3%

▶ 전용면적 60~85㎡이하 : 호당 75백만원 한도, 연리 4%

▶ 상환기간 : 10년거치 20년 상환

② 지방 우수고교 육성

- 개방형 자율학교를 지방중심으로 총41개(현재 4개교)까지 확대·지정 운영
- 혁신·기업도시를 대상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특성화 전문계고 25개 육성
- 농산어촌별로 1군 1우수고교 육성(현재 86개→140개로 확대)

③ 경쟁력있는 지방대학 육성

- 지방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확대
 - 현재 지원중인 이공계 대학생에 장학금('07 예산 : 746억원)의 지방대학 지원비중 대폭 확대(현행 49%→65%)
 - 지방대학 대상으로 인문계 장학금을 신설·지원(연간 2,200명수준)
- 지방대학의 경쟁력 제고
 - 지방대학이 경쟁력있는 분야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국가출연연구소와의 전략적 제휴를 지원하고, 특화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집중 지원
 - 지방대학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 강화
 - * 기업이 대학에 지급하는 맞춤형 교육비용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에 포함
 - * 기업이 지방대학에 기부하는 연구개발설비를 연구개발 설비투자세액공제대상에 포함

④ 선진형 의료서비스 공급

- 체계적 의료서비스체계 구축
 - 지방국립대학병원 : 병원별로 암, 심·뇌혈관계 질환 등 특화분야를 지정하여 해당 전문분야에 대한 지역 중심의료기관으로 육성
 - 지방의료원 : 민간부문의 의료서비스 공급이 어려운 재활, 요양, 만성질환 관리 등 공공의료 서비스에 집중

- 지역보건소 : 주민에 대한 1차 종합보건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발전·강화

· 주민건강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,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등 역점 추진

○ 선진 응급의료체계 구축

- 응급환자가 30분 이내에 진단·처치받을 수 있는 응급의료체계 구축(중환자용 구급차(Mobile-ICU) 보급 등)

- 전국을 50개 중진료권으로 나누어 3대 중증 응급질환(심근경색, 뇌졸중, 중증외상)에 대한 전문응급센터 지정·운영

- 지방국립대의 심·뇌혈관 전문진료센터와 연계하여 광역단위에서 완벽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

○ 지역발전정도가 낮은 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해 건강보험료 기업부담분 대폭 감면

* 현재 농어민·저소득층 및 도서벽지·재해지역 주민에 10~50% 감면중

⑤ 지역선도도시에 교육·문화·의료·복지인프라 확충

○ 혁신·기업도시에 개방형 자율학교를 우선 지정(15개교)하고, 문화·예술 관련 국립시설과 노인요양시설·국공립 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

⑥ 지방의 사회개발 투자 확대

○ 지방교부세 배분시 사회복지·문화 관련 수요비중을 상향조정(현재 36.2%→40%)

⑦ 지방재정 배분시 낙후도 반영 확대

○ 균형발전특별회계 배분기준을 개선하여 낙후도요소 반영 비중 확대(현행 60%→70%)

○ 정부의 매칭펀드사업의 지방분담 비율을 차등화하여 재정력이 취약한 지자체의 재정부담 완화

4. 향후 계획

□ 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에 대하여는 대책 발표 이후 관련법 개정예 착수

□ 예산 반영이 필요한 과제는 2008년도 예산안 및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반영

○ 2008년도 재정소요는 1.6조원 규모로 추정
(기 추진중인 사업 : 6천억원, 08년 신규 증액소요 : 1조원 내외)

* 구체적인 과제별 투자계획은 현재 진행중인 '08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협의·확정 계획

<첨부> 1. 외국의 지역분류 및 차등인센티브 사례
2. 2단계 균형발전 선포식 행사 개요

※ 「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계획」(책자)는 별도 배포

<참고 1> 외국의 지역분류 및 차등 인센티브 사례

국 기	분류기준	지역분류 유형	인센티브 차등지원
E U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역발전수준 1인당 소득 실업률 지역경쟁력 입지특성 국경접경지역 	3개 대분류 및 7개 세분류 ①균형촉진지역 · 낙후지역 · 일시적 낙후지역 · 준낙후지역 · 일시적 준낙후지역 ②경쟁력/고용촉진지역 · 순수 경쟁력/고용 촉진지역 · 일시적 경쟁력/고용촉진 지역 ③국경지역간협력지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분류지역별로 우선지원 분야를 정하여 지원 ①지역에 EU지역개발예산의 82%, ②지역에 15%, ③지역에 3% 를 지원
프랑스	<AFR(지역활성화)> · 1인당 소득 · 인구밀도 · 노동력실업률 등	①낙후지역 ②준낙후지역 ③일시적 낙후지역	①지역 : 투자금의 최대 80%까지 보조 ②지역 : 투자금의 최대 40%까지 보조 ③지역 : 투자금의 최대 15%까지 보조
	<ZRR(농촌재활)> · 인구밀도 · 경제활동참여인구 · 농업종사인구비율	ZRR(농촌재활지역)에 속하는 코뮌 리스트를 매년 선정하고, 리스트를 1년마다 조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업인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14년간 전체/부분면제 노동자는 사회보장부담금 경감
영 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인당소득 실업률 사회보장수혜율 제조업 의존도 	①Tier 1 : 1인당소득이 EU평균의 75%이하지역 ②Tier 2 : 경제활동촉진 지역 ③Tier 3 : 구조조정지역 (과거탄광지역 등)	①지역 : 투자기업규모에 따라 차등보조(30~50%) ②지역 : 투자기업 규모에 따라 10~45% 보조
독 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평균실업률(50%) 실업률 전망(5%) 1인당 소득(40%) 인프라수준(5%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카테고리 A 카테고리 B 카테고리 C 카테고리 D 카테고리 E 지원 불필요지역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역별로 투자비용 보조 차등지원 카테고리 A지역(구동독지역)의 경우 투자기업에 별도 세금감면
태 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인당 소득 지역 인프라수준 투자자 편의 (금융조달, 노동력 등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Zone 1 Zone 2 Zone 3 ※ Zone 3는 다시 2개그룹으로 세분, 인센티브 차등화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법인세 감면기간 차등 적용(3~8년) 교통·전기·수도 등 각종 공공 요금 감면 차등적용
중 국	-	①서부대개발 지역 ②동북3성 지역 ③중부낙후지역	①지역 : 국가장려업종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를 10년간 감면 (33%→15%) ②지역 : 증치세(增値稅:부가가치세와 유사), 법인세 등 감면/특례 적용

<참고 2>

2단계 국가균형발전 선포식

□ 행사개요

- 일시 : '07. 7. 25(수) 14:30~15:35
- 장소 : 진주산업대 체육관
- 주요참석자(1,000명 내외)

구분	주요 참석그룹
관계인사	관련 국회의원, 광역단체장, 기초단체장
경제계 인사	상공회의소, 수도권 이전기업, 지역기업인 등
지역혁신리더	국정과제위원회, 지역혁신협의회, 지역혁신연구회 등
균형발전 유관기관	균형발전담당공무원, 유관기관 대표, 대학총학장 등
이전공공기관 대표	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대표
정부관계자	대통령, 균형위원장, 재경·교육·산자·건교·복지부장관 등

□ 행사 진행

시간	내용	비고
14:30~14:31	입 장	
14:31~14:33	개회사	성경룡 국가균형발전위원장
14:33~14:41	경과보고	“균형발전이 희망입니다”(동영상 상영)
14:41~14:57	2단계정책 발표	기업대책 발표(재경부총리) 사람대책 발표(교육부총리)
14:57~15:07	환영메시지	시·도지사, 각계 대표 등
15:07~15:14	2단계 선포	대통령, 장관, 경제대표, 자치단체장 등이 함께 2단계 균형발전시대 선언
15:14~15:34	치 사	노무현 대통령
15:34~15:35	폐 회	

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계획

2007. 7. 25

재정경제부	과학기술부	교육인적자원부
산업자원부	행정자치부	건설교통부
보건복지부	농림부	공정거래위원회
노동부	기획예산처	균형발전위원회

목 차

I.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필요성	1
II. 2단계 정책비전과 추진전략	4
III. 2단계 균형발전정책의 내용	8
IV. 수도권 발전 대책	57

I.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필요성

- 참여정부는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2004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제정, 지속적으로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중
- 그러나, 수도권에 강력한 흡인력으로 인하여 수도권집중과 지역발전격차 해소에는 역부족 ⇒ 획기적이고 강력한 대책 절실

1. 과도한 수도권 집중

- 수도권의 강력한 흡인력으로 인해 산업·경제·서비스 등 모든 부문에서 수도권으로의 집중이 지속

- * 100대 기업의 91%, 의료기관의 51.1%, 주요대학⁽¹⁾의 62.5%가 수도권에 집중

- (1) 상해교통대가 2006년 발표한 글로벌 500대 대학에 포함된 국내대학 8개 중 5개가 수도권 소재

- * 예금의 67.8%, 소유 부동산가액의 62.5%, 국세의 49.4 %를 수도권이 차지

- 참여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,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, 기업도시 건설 등 강력한 분산정책을 추진해 왔으나

- 그 효과가 2010~2014년 이후에 나타나 수도권 인구·산업의 분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상당한 정도의 시간지체(Time Lag) 발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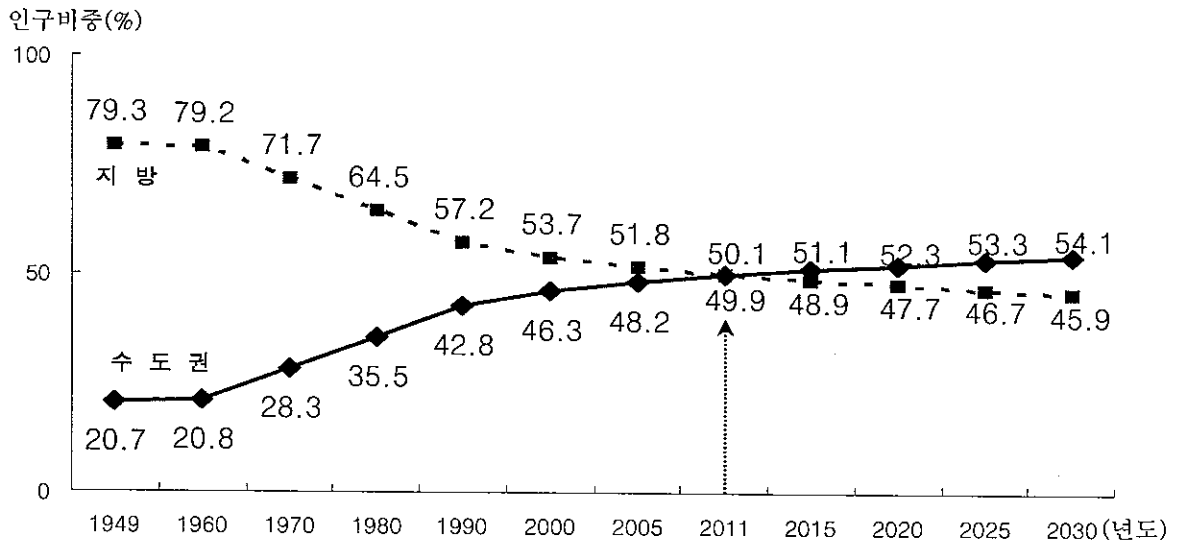
- 수도권과 타 지역의 동반성장이 바람직하나 수도권은 타 지역에 대한 산업간 전후방연관성이 모두 낮은 실정

- 수도권 지역의 성장은 타 지역의 취업이나 고용의 개선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단절적 성장패턴을 보임

□ 수도권에 기업 등 좋은 일자리와 경제력, 교육·문화·의료 기관이 집중된 결과 수도권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

○ 2011년에는 50.1%, 2030년에는 54.1%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

* 현재 수도권 인구비중 : ('02) 47.2% → ('05)48.3% → ('06)48.7%



* 자료 : 시도인구 추계(통계청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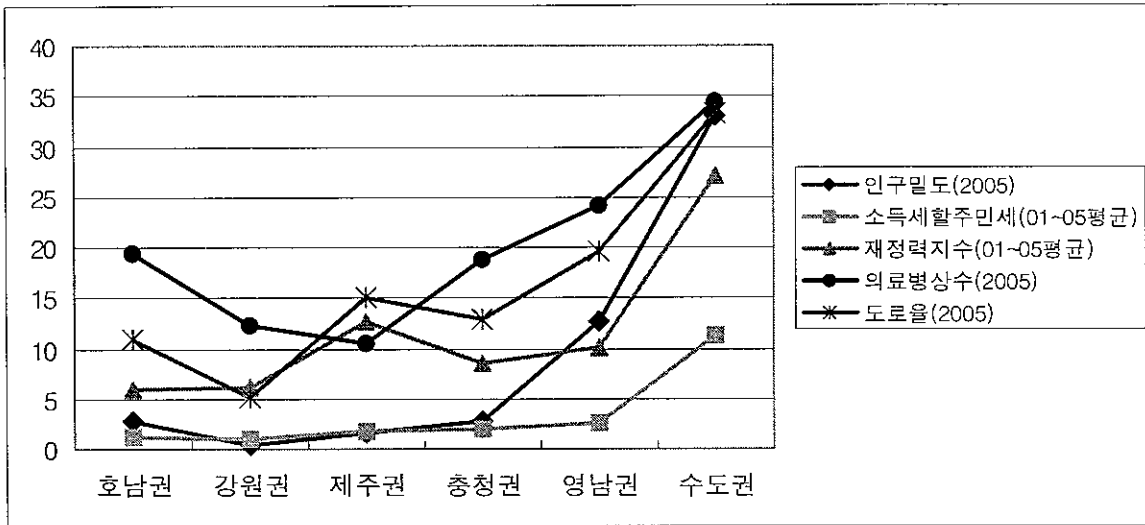
2. 심각한 지역간 발전 격차

□ 지역발전 정도에 대한 종합적 계량분석*에 의하면 수도권 집중과 함께 지역간의 심각한 격차를 확인

* 인구·산업경제·재정·복지 및 인프라 등 5대 부문 14개 지표 분석
(한국지방행정연구원, 07.7월)

○ 인구·소득·재정력·복지 및 인프라 등 주요지표 비교 결과 모든 부문에서 수도권 집중 및 지역간 현격한 격차 발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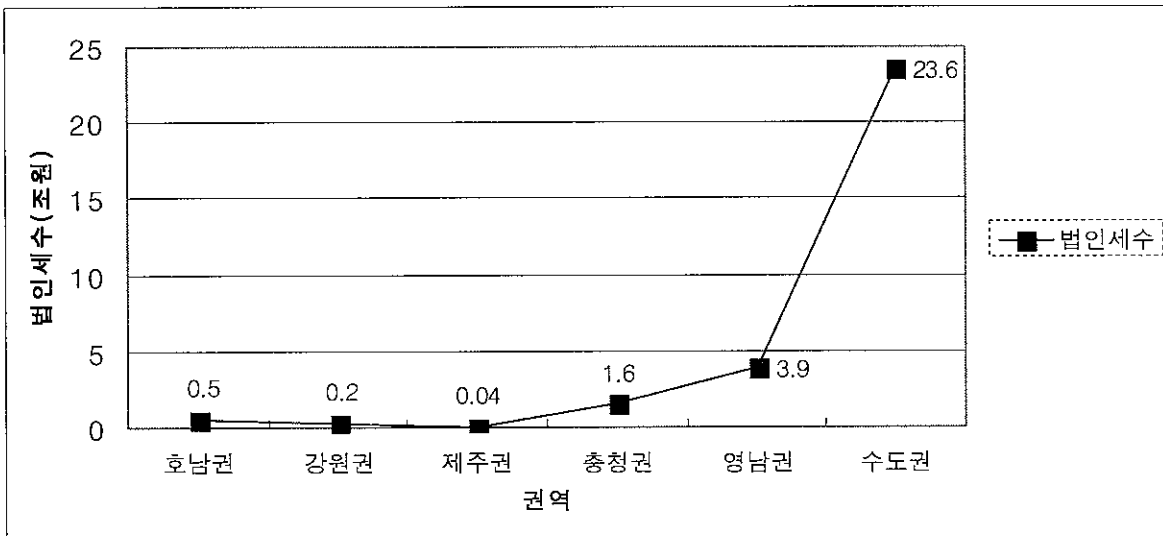
<권역별 주요 분석지표 비교>



○ 법인 본사의 수도권 집중으로 법인세 규모도 지역간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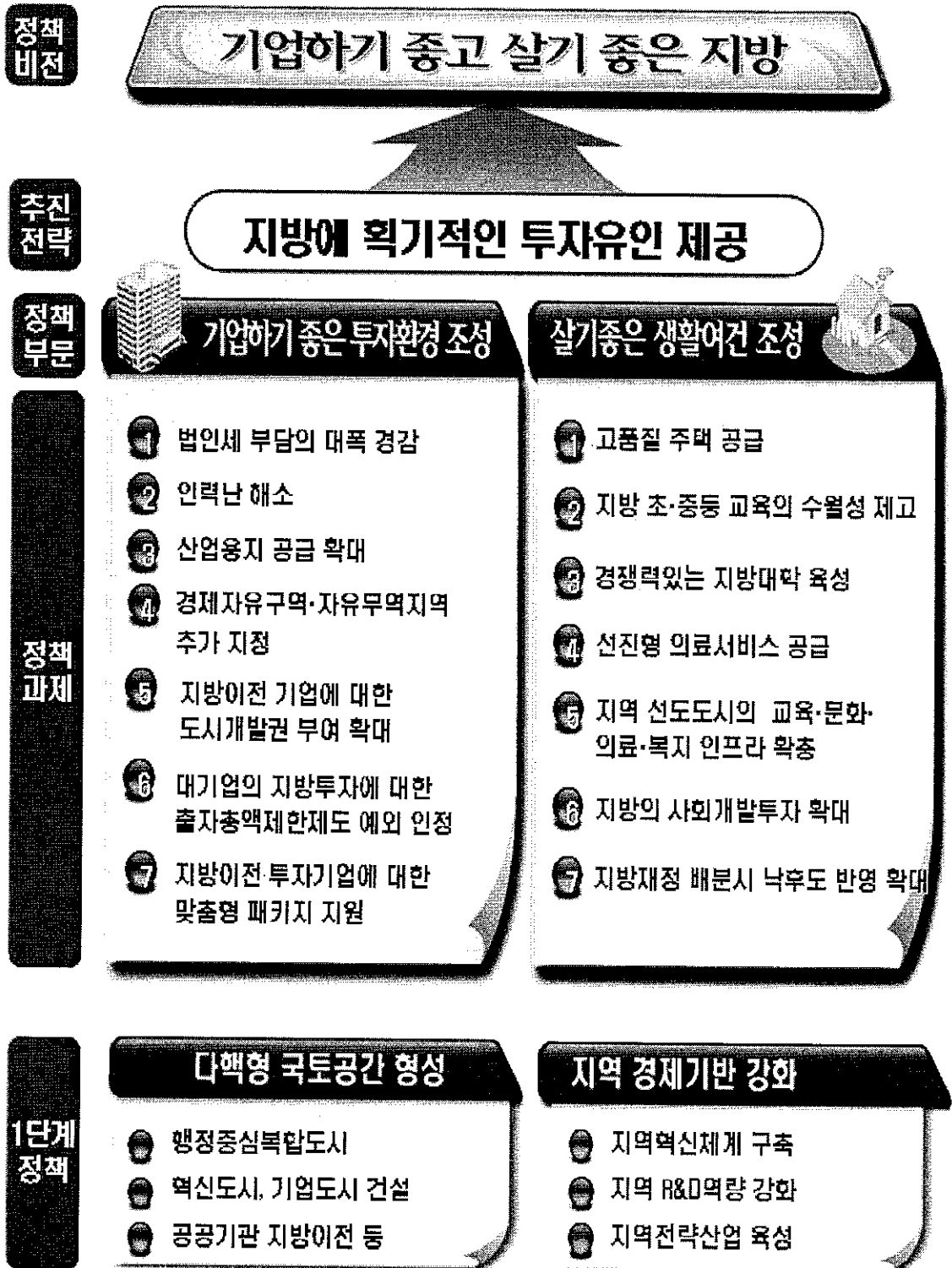
* 법인세수('06년)의 수도권 비중은 79%

<권역별 법인세수 규모 비교>



II. 2단계 정책비전과 추진전략

1. 정책비전과 과제



2. 추진전략

① 민간기업의 지방투자를 통한 지역발전 동력 확충

- 1단계 균형발전정책에서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, 혁신·기업도시 건설 등 정부 및 공공부문 중심의 다핵형 국토공간 조성을 위한 분산정책에 역점을 두어 추진
- 2단계 정책은 참여정부가 그 동안 추진해 온 다핵형 국토공간 조성, 지역경제 기반 강화를 토대로 민간기업의 지방투자를 통한 지역발전동력 확충에 중점
 -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결합을 통해 정책의 완성도와 실효성을 높여 실질적인 지역발전 동력을 확실하게 확보

② 지방투자기업에 획기적인 인센티브 제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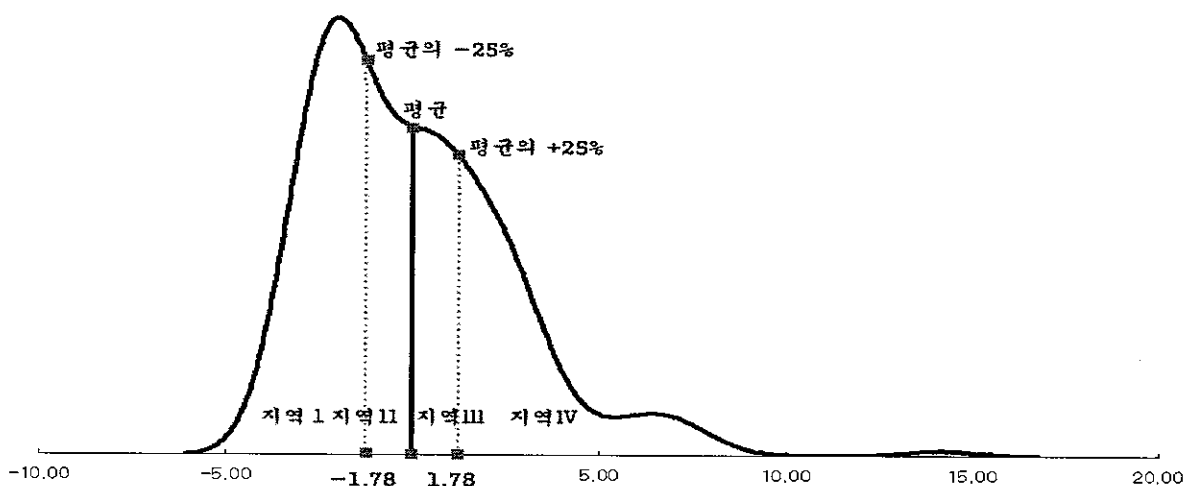
- 기업이 지방에 투자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지방투자에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
 - 산업용지 공급, 인력난 등 기업의 지방투자 애로사항 해소
 - 법인세 부담 경감 및 지방투자 기업에 도시개발권 부여, 출총제 예외 등 인센티브 제공
 - 혁신·기업도시,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등의 집중 육성을 통한 지역발전 거점 마련
-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맞춤형 패키지 지원 등 기업지원시스템 개선

③ 살기 좋은 생활여건 조성 병행 추진

- 기업의 지방이전 및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종사자가 지방에서 정주할 수 있도록 교육·의료 등 공공서비스 개선에 중점
 - 지방이전기업 종사자의 주거환경 개선 및 교육·의료 인프라를 개선하여 쾌적하고 매력있는 생활여건 마련
 - 기업의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방 대도시·중소도시를 주요 거점으로 시군·농촌마을과 연계된 공공서비스 기반을 확충

④ 종합적·객관적 지역분류와 인센티브 차등 지원

- 전국을 지역발전정도에 따라 분류, 차등지원기준으로 활용
 - 인구·경제력 등 5대 부문 14개 지표의 통계치를 종합평가하여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를 4개 그룹으로 분류
 - * 14개 지표 : 인구부문(3개), 산업·경제부문(4개), 재정부문(3개), 복지부문(2개), 인프라부문(2개)



- 지역분류를 제도화하여 법인세 감면 등 정부정책을 차등지원

<참고> 외국의 지역분류 및 차등 인센티브 사례

국 가	분류기준	지역분류 유형	인센티브 차등지원
E U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역발전수준 1인당 소득 실업률 지역경쟁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입지특성 국경접경지역 	3개 대분류 및 7개 세분류 ①균형촉진지역 · 낙후지역 · 일시적 낙후지역 · 준낙후지역 · 일시적 준낙후지역 ②경쟁력/고용촉진지역 · 순수 경쟁력/고용 촉진지역 · 일시적 경쟁력/고용촉진 지역 ③국경지역간협력지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분류지역별로 우선지원 분야를 정하여 지원 ①지역에 EU지역개발예산의 82%, ②지역에 15%, ③지역에 3% 를 지원
프랑스	<AFR(지역활성화)> · 1인당 소득 · 인구밀도 · 노동력실업률 등	①낙후지역 ②준낙후지역 ③일시적 낙후지역	①지역 : 투자금의 최대 80%까지 보조 ②지역 : 투자금의 최대 40%까지 보조 ③지역 : 투자금의 최대 15%까지 보조
	<ZRR(농촌재활)> · 인구밀도 · 경제활동참여인구 · 농업종사인구비율	ZRR(농촌재활지역)에 속하는 코윈 리스트를 매년 선정하고, 리스트를 1년마다 조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업인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14년간 전체/부분면제 노동자는 사회보장부담금 경감
영 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인당소득 실업률 사회보장수혜율 제조업 의존도 	①Tier 1 : 1인당소득이 EU평균의 75%이하지역 ②Tier 2 : 경제활동촉진 지역 ③Tier 3 : 구조조정지역 (과거탄광지역 등)	①지역 : 투자기업규모에 따라 차등보조(30~50%) ②지역 : 투자기업 규모에 따라 10~45% 보조
독 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평균실업률(50%) 실업률 전망(5%) 1인당 소득(40%) 인프라수준(5%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카테고리 A 카테고리 B 카테고리 C 카테고리 D 카테고리 E 지원 불필요지역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역별로 투자비용 보조 차등지원 카테고리 A지역(구동독지역)의 경우 투자기업에 별도 세금감면
태 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인당 소득 지역 인프라수준 투자자 편의 (금융조달, 노동력 등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Zone 1 Zone 2 Zone 3 ※ Zone 3는 다시 2개그룹으로 세분, 인센티브 차등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법인세 감면기간 차등 적용(3~8년) 교통·전기·수도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차등적용
중 국	-	①서부대개발 지역 ②동북3성 지역 ③중부낙후지역	①지역 : 국가장려업종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를 10년간 감면 (33%→15%) ②지역 : 증치세(增值稅:부가가치세와 유사), 법인세 등 감면/특례 적용

Ⅲ. 2단계 균형발전정책의 내용

(기업 대책)

분 야	대 책
1. 세부담 경감	I-1. 법인세 등 세부담 경감
2. 인력난 해소	I-2. 지방중소기업의 기술전문인력 확보 지원
	I-3. 지방기업의 주문형 인력양성제도 확대
	I-4. 외국인력을 지방기업에 집중 지원
	I-5. 지방기업에 고용보조금 신규 지원
3. 산업용지 공급확대	I-6. 공공임대산업단지 공급 확대
	I-7. 초장기·초저가 임대산업단지 공급
	I-8. 산업용지 공급특례제도 도입
4. 경제자유구역· 자유무역지역 추가지정	I-9.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
	I-10. 자유무역지역 확대 지정
5. 도시개발권	I-11. 지방이전기업에 도시개발권 부여 확대
6. 출총제 예외인정	I-12. 대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한 출총제 예외 인정
7. 지방기업에 맞춤형 패키지 지원	I-13. 지방기업 종합지원센터 설치·운영
	I-14. 지방이전보조금 지원 확대

(사람 대책)

분 야	대 책
1. 고품질 주택 공급	Ⅱ-1. 지방이전기업 종사자에 공공주택 특별분양제도 도입
	Ⅱ-2. 지방이전기업 종사자에게 임대주택 공급 지원
	Ⅱ-3. 지방이전기업의 전원마을 조성 지원
	Ⅱ-4. 지방의 주택관련 세제부담 경감
2. 지방 초중등교육 수월성 제고	Ⅱ-5. 지역 초중학교를 지역복지거점학교로 육성
	Ⅱ-6. 지방 우수고교 육성
	Ⅱ-7. 방과후 학교의 교육품질 향상
3. 경쟁력있는 지방대학 육성	Ⅱ-8. 지방대학 장학금 지원 확대
	Ⅱ-9. 지방대학의 학생전용 임대주택 지원
	Ⅱ-10. 지방대학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
	Ⅱ-11. 국가출연연구기관과 지방대학간 전략적 제휴
	Ⅱ-12. 지역 특화분야 연구개발 선도대학 육성
4. 선진형 의료서비스 공급	Ⅱ-13. 지방국립대병원을 3차 전문·특화의료기관으로 육성
	Ⅱ-14. 지방의료원을 2차 지역거점의료기관으로 육성
	Ⅱ-15. 지역보건소를 1차 지역의료건강센터로 발전·강화
	Ⅱ-16. 지역주민 건강관리체계 구축
	Ⅱ-17. 선진 응급의료체계 구축
	Ⅱ-18.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
5. 지역선도도시 정주여건 확충	Ⅱ-19. 혁신/기업도시내 교육·문화·보육·의료·노인복지 인프라 확충
6. 사회개발투자	Ⅱ-20. 지방의 사회개발투자 확대
7. 지방재정배분시 낙후도 반영 확대	Ⅱ-21. 균특회계 배분기준 개선
	Ⅱ-22. 매칭펀드사업의 지방분담비율 차등화

가. 지방기업 세제지원

1. 현황 및 문제점

□ 현재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창업 및 지방 이전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제도를 운용중

- 지방 창업 중소기업 : 법인·소득세를 4년간 50% 감면
- 지방 이전기업 : 법인·소득세를 5년간 100%, 2년간 50% 감면
- 지방 소재 중소기업 : 수도권 소재 기업보다 높은 감면을 적용
 - 수도권 : 소기업 10~20% (지식기반 중기업 10%)
 - 비수도권 : 소기업 10~30% (중기업 5~15%)

□ 그러나 현행 지원제도가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 및 지방창업을 대폭 유인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

- 비수도권과 수도권간 창업비율이 크게 변화하지 않고 있음

	<u>'03년</u>	<u>'04년</u>	<u>'05년</u>	<u>'06년</u>
▪ 비수도권:수도권창업비율(%)	66:34	65:35	63:37	64:36

- 수도권 소재 기업중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증가하고는 있으나, 전체적으로 미흡

	<u>'03년</u>	<u>'04년</u>	<u>'05년</u>	<u>'06년</u>
▪ 이전기업수/수도권기업수	0.01%	0.01%	0.02%	0.03%
(이전기업수)	(138)	(196)	(316)	(365)

2. 제도개선 내용

□ 지방기업에 법인·소득세를 지역발전정도에 따라 차등감면하고, 감면대상의 최저한세율 적용을 배제

① 중소기업

- 이전·창업·기존기업 모두에게
기간제한 없이 지역발전 정도에 따라 차등감면

② 대기업

- 지방이전시 15(10+5)년간 지역발전정도에 따라 차등감면
- 지방창업시 10(7+3)년간 지역발전정도에 따라 차등감면

[법인세 차등감면 방식]

	현 행	개 선
중소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창업 : 4년 50% 감면 • 이전 : 5년 100%, 2년 50% 감면 • 운영 :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('08년말限) • 수도권 10~20%, 지방 5~30%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창업·이전·운영 통합 • 지역별로 차등 감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지역 I : 70% · 지역 II : 50% · 지역 III : 30% · 지역 IV : 0%
대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이전시 최초 5년 100%, 이후 2년 50%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이전시(수도권→지역 I·II·III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최초10년: 70%·50%·30% 감면 · 이후 5년: 35%·25%·15% 감면 • 창업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최초7년: 70%·50%·30% 감면 · 이후3년: 35%·25%·15% 감면

※ 지역 I 로 갈수록 낙후, 지역 IV 로 갈수록 발전지역임을 의미

나. 이전부지 세제지원

1. 현황 및 문제점

- 현행법상 지방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을 받기 위하여는 이전 후 2년내에 구공장시설을 양도하거나 철거·폐쇄 필요
- 그러나,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에 소재한 공장부지의 경우, 공장신축제한 또는 건축가능시설물 종류 제한으로 매수 수요가 작아 현실적으로 2년내 양도가 어려운 실정
- 따라서 양도가 되지 않아 철거·폐쇄하는 경우, 공장이전 전에는 분리과세 대상이었던 공장용지가 비업무용 토지로 변경되어 합산과세대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보유세 부담 증가

<u>공장 이전 전 보유세부담</u>	⇒	<u>공장 이전 후 보유세부담</u>
재산세(0.2%), 종부세(비과세)		철거시: 재산세(0.2~0.5%), 종부세(1~4%) 폐쇄시: 재산세(0.2~0.5%), 종부세(0.6~1.6%)

- 한편, 종전부지 양도시 양도차익 과세 이연기간(3년거치 3년분할과세)이 짧아 이전기업에게 일시적인 자금부담 발생

2. 제도개선 내용

- 지방이전한 수도권 구공장부지에 대해 이전후 5년간 종전 공장용지와 같이 분리과세대상으로 간주(재산세 0.2% 과세, 종부세 비과세)
- 종전부지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이연기간을 연장하여 일시적인 자금부담 완화 (현행 3년거치 3년 분할과세→ 5년거치 5년 분할과세)

1. 현황

□ 현재 중소기업의 기술·연구 전문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중

- 미취업 석·박사급 고급 연구인력의 중소기업 고용(1년) 지원
- 중소기업에 전문기술인력 활용을 장려하기 위한 고용기금 지원
- 자연계 석·박사가 기업에서 군복무를 대체근무하는 전문연구요원제 운영

□ 그러나,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비율이 낮은 실정

- * 미취업 석박사 연구인력 고용의 지방기업 지원비중 : 37%('07)
- 자연계 전문연구요원의 지방기업 지원비율 : 30%('07)

2. 제도개선 내용

□ 미취업 고급연구인력의 지방중소기업 고용 지원 확대

○ 미취업 석박사급 연구인력 고용지원 확대

- 지방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고용지원기간을 확대(1년→3년)하여 장기근무를 유도하고,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비중 확대

* 고용지원 인력 : ('07) 430명 ⇨ ('08) 550명 ⇨ ('09) 680명

* 지방지원율 : ('07) 160명(37%) ⇨ ('08) 275명(50%) ⇨ ('09) 408명(60%)

○ '산업체 퇴직 기술인력'을 고용하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추가('08부터 적용)

□ 지방중소기업에 대하여 전문인력 활용 장려금 지원 확대

- * (현행) 전문인력 3인 이내 지원 ⇨ (개선) 지방중소기업은 5인까지 확대
- * 고용기금 지원규모 확대 : ('07) 383억원 ⇨ ('08) 600억원

□ 자연계 석박사급 전문연구요원의 지방중소업체 배정을 단계적으로 확대

- * 현재 30% → 08년 40% → 09년 이후 50%

□ 중소기업의 자체 R&D역량 제고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혁신센터(RIC)내 기업 부설 연구공간의 전문연구인력 활용 지원

- * RIC내 기업부설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연구인력 인건비 및 운영경비 일부지원

I-3 지방기업의 주문형 인력양성제도 확대

1. 현황 및 문제점

□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인재양성 및 산학협력의 거점 대학 육성을 위해 '04년부터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 실시 ('07년 예산 520억원)

※ 참여대학(전문대) : 13개 대학 / 10개 전문대학

□ 현행 23개 “산학협력중심대학”만으로는 지역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인력을 적기에 공급하기에 한계

○ 기업은 기술개발 및 투자 결정시 인력확보 가능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므로 지방기업의 주문형 인력양성 시스템을 확대·강화하는 것이 필요

2. 제도개선 내용

□ 현행 산학협력중심대학 사업을 “지방대학의 지역기업 주문형 인력양성 중심”으로 확대 추진

* 주문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: 지역기업이 요구하는 교육훈련수요에 맞추어 계약형학과, 특성화학과 등 맞춤형 인력 집중 육성

○ 산학협력중심대학을 현행 23개에서 '09년도까지 40개로 확대

* 지원예산('07년 520억원) 중 지방대학 지원비율을 72%에서 84%('09)까지 확대

I-4

외국인력을 지방기업에 집중 지원

1. 현황

□ 정부는 국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외국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지난 2004년부터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시행중

* 현재 외국인력의 27%만이 지방기업에서 근무('06.12, 고용허가제 기준)

○ 6개 업종에 한하여 외국인고용을 허용

- 외국인력 허용업종(6개) : ①제조업 ②건설업 ③농축산업, ④연근해어업 ⑤양식어업 ⑥일부 서비스업(냉장·냉동창고업, 재생용재료수집및판매업)

○ 고용허용업종이라 하더라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최대 고용 허용인원을 제한

2. 제도개선 내용

□ 지방기업의 외국인 고용한도를 현행보다 20% 추가 허용하고, 지방이전기업을 외국인 고용신청시 우선 배정

*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에 따라 07.3월부터 기 시행중

□ 지방기업에 대하여 외국인 고용허가가 필요한 추가업종 조사 후,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 상정(08년 상반기)

* 추가허용업종 검토시 내국인 고용피해를 감안

I-5**지방기업에 고용보조금 신규 지원****1. 현황 및 문제점**

□ 현재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기업에 대하여는 세제·금융상의 혜택과 함께 각종 보조금 제공

* 50인 이상 이전기업에 대해 부지매입비, 시설투자비, 고용·훈련비 등 일부 지원

□ 그러나, 기존의 지방기업에 대하여는 별도의 정부지원이 미흡하여 이전기업과의 형평성 문제 발생

2. 제도개선 내용

□ 기존의 지방기업이 신규투자자로 일정기준 이상의 고용을 창출할 경우 고용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하는 제도 도입

[지방기업 고용보조금제도(신설)]

- 대상 : 제조업·산업지원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지방소재기업
- 지원조건 : 신규투자자로 일정규모 이상의 고용창출시
최소 신규고용규모 초과 1인당 50만원 이내에서 최장2년간 지급

		신규투자금액	최소신규고용	지원 규모
제조업	소기업 (1~49인)	5억원 이상	1명 이상	신규고용인원×50만원이내/인×24개월
	중기업 (50~299인)	10억원 이상	5명 이상	5명 초과 신규고용인원×50만원이내/인×24개월
	대기업 (300인 이상)	20억원 이상	20명 이상	20명 초과 신규고용인원×50만원이내/인×24개월
산업지원서비스업		1억원 이상	제조업기준과 동일	제조업기준과 동일

- 지원한도 : 신규투자금액의 20% 이내(산업지원서비스업은 50% 이내)
- 지자체 분담 : 지역발전정도에 따라 분담율 차등(10~30%)

1. 현황

- 중소기업 투자활성화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'06.4월 1단계 임대전용 산업단지 제도를 도입·추진
 - 대불, 포항 등 6개 산단에 총 240만㎡ 지정·공급 완료

2. 제도개선 내용

- 임대전용 산업단지를 '08~'17년간(10년) 총 330만㎡ 규모로 추가 공급
 - '07.10월까지 임대산업단지 공급계획을 확정하여 '08년부터 연평균 33만㎡ 규모의 임대산업단지 공급
 - * 국가·지방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지역별·연차별 임대산업단지 공급계획 확정('07.10월)

I-7 초장기·초저가 임대산업단지 공급

1. 현 황

- 175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하여 건설중인 혁신도시에 산·학·연 클러스터 용지로 총 개발면적의 약 5%를 확보 (근거 : 혁신도시 계획기준)

2. 제도개선 내용

- 9개 혁신도시 개발계획에 확보된 산·학·연 클러스터 용지의 50%를 임대전용산업단지로 지정
 - 혁신도시별 3만6천~16만㎡의 클러스터용지 총 78.5만㎡를 최첨단기업 및 연구소부지로 공급하되,
 - 초장기(예:50년), 초저가(연간 임대료 : 조성원가의 1% 미만, 3.3㎡당 5천원 수준)로 제공

1. 현황 및 문제점

- 수도권소재 기업이 지방이전을 원하는 경우 기업이 원하는 지역에 적기 산업용지의 공급시스템 부재

* 현행 지방이전을 원하는 기업에 대한 산업용지 공급특례 제도가 별도 없음

- 기업이 원하는 지역·규모의 부지공급을 위한 각종 절차 복잡

2. 제도개선 내용

- 「지방이전기업 전용단지」를 개발, 수도권소재 기업(기업군)이 지방으로 이전 또는 신규투자하는 경우 인센티브·특례 지원

- 농지 또는 산지 전용 및 사전환경성 검토 등에 관한 입지 규제심사에 대한 Fast Track 제도 등 도입

- 긴급한 산업용지 공급방안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별도 대책 강구(그린벨트, 수자원 보호구역,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)

*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을 개정하여 제도화

- 국무총리 산하에 「이전기업 용지 애로해소위원회」(가칭)를 두어 포괄적 지원체제 구축

* 이전기업 용지 애로해소위원회

- 위원장 : 국무조정실장, 위원 : 관계부처 차관 및 시·도지사

- 주요 임무

- 이전기업 전용단지 조성 및 부지관련 인허가 규제 일괄처리 조정
- 이전기업 전용단지 조성 및 육성에 필요한 기반과 시설 우선 지원
- 이전기업전용단지의 신속한 지정을 위한 부처간 협조 및 의견조정 등

1. 현황

- 지난 2003년에 인천, 부산·진해, 광양만권 등 3개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

구분	인천 ('03.8.6 지정)	부산·진해 ('03.10.27 지정)	광양만권 ('03.10.27 지정)
위치	송도, 영종, 청라 등 3개 지구	부산·진해시 일원 5개 지구	여수·순천·광양시 및 하동 5개 지구
면적	209km ²	104.8km ²	88.98km ²

- 이들 경제자유구역에 대하여는 세금감면 등 각종 혜택 부여

* 경제자유구역의 주요 규제특례 사항

- (조세) 외투기업에 소득세·법인세 등 3년간 100%, 2년간 50% 감면
수입자본재에 대한 관세 3년간 100% 면제
- (의료·교육) 외국법인(비영리)의 병원 및 학교 설립 허용 등

2. 개선 방향

- 지난 3년간의 경제자유구역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추가 지정 시기 및 지정요건·기준 등 마련

○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「경제자유구역위원회」 심의 예정

- '07년 하반기중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을 받아 경제자유구역 위원회 심의 후 추가 지정

I-10

자유무역지역 지정 확대

1. 현황

- 현재 3개 유형(산업단지형, 항만형, 공항형)의 자유무역지역 총 10곳을 지정, 운영중

<자유무역지역 현황>

구 분	산업단지형						항만형			공항형
	마산	익산	군산	대불	동해	울촌	인천항	광양항	부산항	인천국제공항
○지정일자	70.1.1	73.10.8	00.10.6	02.11.21	05.12.12	05.12.12	03.1.1	02.1.1	02.1.1	05.4.6
○지정면적 (천㎡)	953	309	1,256	1,158	248	343	2,294	6,755	5,451	2,090
○관리권자	산자부장관						해수부장관			건교부장관

-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게는 세금감면 등 각종 혜택 부여

* 자유무역지역의 주요 인센티브

- (세제) 외투기업에 소득세·법인세 등 3년간 100%, 2년간 50% 감면
지방세 15년간 100% 내지 50% 감면,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무관세
- (임대료) 저가의 임대료(공시지가의 1%이내, 주변시가의 1/5~1/10)
- 기타 입주허가, 건축허가, 외국인투자신고 등 One-Stop서비스 지원

2. 개선 방향

- 자유무역지역 지정 확대 추진

- 비수도권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수요조사('07.8), 타당성 평가('07.9~'08.5), 관계부처 협의 및 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지정('08.7)

1. 현황 및 문제점

- 현재 민간기업이 기업도시를 개발(기업도시개발특별법)하거나, 수도권 과밀억제권에서 지방 이전시(도시개발법) 도시개발권 부여

《 현행 기업도시 개발요건 》

	산업교역형	지식기반형	관광레저형	혁신거점형
개발 최소면적(만㎡)	500	330	660	330
가용지 중 주된용지 조성비율(%)	40	30	50	30
개발용지 직접사용비율(%)	30	20	50	30

2. 제도개선 내용

- 지방이전기업 등이 개발하는 새로운 기업도시 유형을 신설
(가칭 : 복합거점형)

* 적용대상 예시

- 수도권에 일정기간 입지한 기업으로 본사이전 및 공장신설에 따라 이전하는 종업원 수가 일정규모(예 : 1,000명) 이상 기업
-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지방에 있는 기업을 인수·합병하여 추가 고용되는 종사자가 일정규모(예 : 1,000명) 이상 기업
- 기업군 형태로 지방 이전 또는 신규투자하는 경우에도 적용

□ 새로운 유형의 기업도시 개발시 최소개발면적과 사업시행자
요건 등을 완화

○ 최소개발 규모를 완화(현행 330만㎡ → 100만㎡)하고, 종업원
규모에 따라 도시개발 규모를 차등화

(예시) 1,000명 ~ 2,000명 → 100만㎡ ~ 165만㎡

2,000명 ~ 3,000명 → 100만㎡ ~ 231만㎡

3,000명 이상 → 100만㎡ ~ 330만㎡

○ 공장용지 위주의 소규모 개발을 원하는 경우는 도시개발
사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**현행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요건
완화**

*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(시행자 요건 완화)

- 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→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
하는 기업

□ 시행자의 주된 용지확보 및 직접사용 의무비율 등을 적정 설정

* 전문기관 연구용역으로 유형신설방안, 적정 개발면적 등을 검토 후
기업도시특별법 개정('07.9월)

I-12 대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한 출총제 예외 인정

1. 현황

- 현재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중 자산 2조원 이상인 기업은 일정한도(순자산의 40%)를 초과하여 다른 국내 기업의 주식을 취득·소유할 수 없음(공정거래법 제10조)

* '07.7월 현재 출자총액의 제한을 받는 기업은 모두 25개사

2. 제도개선 내용

- 지방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위해 본점이 지방에 소재한 기업에 대한 출자에 대하여 출자총액제한의 예외 인정
- 현재 국회 계류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(의원입법안)에 반영된 상태(07.6.22 정무위 통과)

< 동법 개정안중 관련 내용 >

- 지방기업(법 개정 이후 신설된 지방기업에 한함)에 대한 주식취득시 출총제 예외 인정
- 법 개정 이전의 기존 기업이더라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에 대한 주식취득은 예외 인정

1. 현황 및 문제점

- 현재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애로는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정부와 지자체를 접촉하여 해결
- 지방이전기업을의 수가 증가하면서 상담 등 행정서비스 수요가 증대되고, 이전기업을의 요구사항도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제기되나,
 - 정부부처별로 단편적·획일적 지원에 머물러 지방이전기업을들에게 불필요한 행정비용으로 인식

2. 제도개선 내용

- 산자부에 「지방기업 종합지원센터」, 관련부처·지자체에 「지방기업지원창구」를 개설 운영하여 기업지방이전/투자 전담 지원
 - 기업이전 Call Center 및 지방투자 포털사이트(comis.go.kr) 운영
 - 지방이전/투자의 전 단계에 걸쳐 컨설팅 및 민원 전담 처리
 - 정부합동 T/F를 구성 운영하여 기업지방이전/투자에 대해 맞춤형 종합서비스 시행
 - * 일정규모 이상의 지방이전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전담 정부합동 T/F를 구성·운영하여, 인허가 등을 일괄 대행하고, 인프라·인력 등 정부 지원프로그램을 패키지화하여 지원

1. 현황 및 문제점

현재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소재 기업에 대하여 지방이전에 따른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하여 각종 보조금 제공

* 50인 이상 이전기업에 대해 부지매입비, 시설투자비, 고용·훈련비 등 일부지원

그러나, 중소기업체(50인미만)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지원대상 기준을 완화할 필요

○ 또한,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의 경우 매칭재원 확보 부담 때문에 기업유치경쟁에서 불리, 이전기업의 지역적 편중 발생

2. 제도개선 내용

중소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을 위해 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는 이전기업의 고용규모 요건을 완화

* 지방이전기업 상시 고용규모 : (현행) 50인 이상 → 30인 이상

이전보조금 지원금액을 지역발전정도에 따라 차등지원

* 국비지원비율 : (현행) 일반 50%, 낙후 80%

(개선) 4개유형 지역별로 차등화(50%~80%)

*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투자액 대비 보조금 지원가능범위를 차등적용

<참고>

기업이전보조금제도 개정 前後 비교

구 분	현 행	개선
지원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입지보조금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분양가(지가) 및 임대료의 50%범위내에서 지자체가 지원, 국가는 지자체 지원금의 50%까지 지원 ▪ 고용/훈련보조금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신규인원 20인 초과 고용시 1인당 50만원/월 6개월간 지원 ▪ 투자(건축비, 시설장비비, 기반시설비)보조금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자체 지원금액의 최대 50%까지 지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입지보조금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차등지원 ▪ 투자보조금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차등 지원
피 이 전 대상지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(전지역) ▪ 성장관리권역 일부(안산, 김포, 화성, 포천, 양주) (인구, 사업체수, 출하액 등 법령상 기준을 적용하여 선정) ▪ 예외지역 : 접경지역, 오지 등 낙후지역 	좌 동
이전대상 규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수도권에 3년이상 소재 총고용규모 50인이상 기업의 전부·일부가 이전하여 50인이상 고용유지 - 이전의 파급효과가 큰 기업연구소, R&D전문기업 및 문화산업기업 이전시 탄력적용 (기업연구소는 이전후 규모가 30인이상, R&D전문기업 및 문화산업기업은 총 고용규모 30인 이상이고 이전후 규모 30인이상) 	▪ 30인 이상
재원분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일반기준(국가:지자체) : 50:50 ▪ 낙후지역(국가:지자체) : 80:20 	▪ 4개 유형 (50%~80%)
지원절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입지/투자보조금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부지매입, 임대계약 체결시부터 체결후 1년 이내 지자체에 신청 ▪ 고용/교육훈련보조금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업개시 이후 3년 이내 	좌 동
사후관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외국인투자기업 지원 사후관리 준용 - 입지보조금 : 5년내 처분불허, 10년내 처분시 지원분 회수 - 고용/교육 훈련보조금 : 3년간 고용규모 유지 등 	좌 동

II -1 지방이전기업 종사자에 공공주택 특별분양제도 도입

1. 현황 및 문제점

- 현재 지방이전기업 종사자 중 무주택 세대주에 한해 민영주택을 특별공급하고 있음(주택공급에 관한 규칙)
- 이에 따라, 이전기업 종사자 중 유주택 세대주의 주택 마련이 어려워 기업이전에 장애로 작용

2. 제도개선 내용

- 지방이전기업 종사자에 대하여 다른 자격 요건과 관계없이 주택을 특별공급
- 청약통장가입, 유주택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지역 민영주택 건설량의 10% 범위 내에서 주택을 특별공급받을 수 있도록 주택공급규칙을 개정

*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 추진 : 2007년 하반기

현 행	개정안
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종사자중 무주택세대주에게 민영주택을 특별공급	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종사자에 대하여 다른 자격 요건과 관계없이(유주택자 포함) 주택을 특별공급

11-2 지방이전기업 종사자에게 임대주택 공급 지원

1. 현황 및 문제점

□ 현재 국민주택기금에서 사원임대 주택자금을 지원하는 용자 대상자는 다음 세가지 경우에 한정

- ① 주택건설사업 등록자
- ② 주택건설사업 등록자와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토지 소유자
- ③ 주택건설사업 등록자를 시공자로 하여 근로자 주택을 건설하는 고용자

□ 지방이전기업 사원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건설자금에 대한 별도의 혜택은 미비

2. 제도개선 내용

□ 지방이전기업이 국민주택규모(85㎡이하)의 사원용 임대주택을 20호 이상 건설하고자 할 경우, 국민주택기금의 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지원조건과 동일하게 저리용자 지원

《 지원조건 》

- ▶ 전용면적 60㎡이하 : 호당 55백만원 한도, 연리 3%
- ▶ 전용면적 60~85㎡이하 : 호당 75백만원 한도, 연리 4%
- ▶ 상환기간 : 10년거치 20년 상환

1. 필요성

- 지방이전기업 임직원 및 가족의 장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고품질의 전원주거단지 조성 지원 필요

2. 제도개선 내용

- 지방이전기업의 임직원과 가족을 위한 전원주거단지 조성시 기본인프라 설치 지원

- 지방이전기업이 해당 시·군과 협의하여 사업신청을 하면 시·군 또는 한국농촌공사가 마을기반시설 설치 지원

* 지원대상 : 마을조성규모 20호 이상, 부지면적 20,000㎡ 이상

* 대상지역 : 수도권·광역시를 제외한 면지역

- 전원마을 주택건축비 저리 융자지원 확대

- 주택신축 융자금 지원한도 확대 및 금리 인하 추진

- 융자지원 한도: (현행) 30~40백만원/호당 → (개선) 80백만원 이내/호당

- 금리: (현행) 3~4% → (개선) 3% 수준

* 다만, 택지구입비 융자지원은 부동산투기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제외

- 융자지원 대상 건축규모를 확대

(현행) 100㎡이하 → (개선) 150㎡이하

가. 지방이전기업 종업원의 양도세 비과세기간 연장

1. 현황 및 문제점

- 현재 지방이전으로 인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, 종전 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으로 취급하는 양도세 비과세 특례제도 운영

* 일반인 :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종전주택을 1년내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
지방이전기업 직원 : 2년내 양도시 특례제도 적용

2. 제도개선 내용

- 지방이전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(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개정 추진)

나. 농촌주택 양도세 면세기준 완화

1. 현황

- 도시주택과 농어촌주택을 보유하다 도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주택은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

* 농어촌주택은 취득시 7천만원 이하, 도시주택 양도시 1억원이하이어야 함

2. 제도개선 : 농촌주택 양도소득세 면세기준을 완화 (조세특례제한법 99조의 4 개정 추진)

- 농어촌주택 취득가액 요건을 상향조정
(현행) 기준시가 7천만원 이하 → (완화) 기준시가 1.5억원 이하
- 도시주택 양도시 농어촌주택 가액요건(1억원)은 폐지

1. 현황 및 문제점

- 농산어촌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학교를 종합 문화공간으로 개편하여 지역복지의 거점으로 육성

[지역복지거점학교]

- 개념 : 학교를 지역의 문화·예술 공간 등 복합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의 복지거점모델로 육성
- 내용 : 예체능 전문인력·원어민교사 지원, 주말 학습·보호기능 강화, 주민대상 문화·복지 프로그램 등 지원

- 또한, 농산어촌지역은 열악한 지역 경제여건으로 인해 저소득층 학생들의 비율이 높아 획기적인 교육복지 지원 필요

2. 제도개선 내용

- 지역거점 초중학교(1,060개)를 선정하여 지역복지 중심 센터로 육성

- 농산어촌지역 : 소규모 통폐합학교 우선 지원(시군당 2개)

- 학교를 지역주민의 교육·문화·복지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시설 확충
- 거점학교 중심으로 인근학교와 학교군을 구성하여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등 소규모 학교 통폐합 기반 조성

- 중소도시 : 저소득층 학생 밀집 학교 중심으로 도시당 2개 내외의 지역복지거점학교 육성

1. 현황 및 문제점

□ 현재 지방 고교는 우수학생의 도시유출·교육여건 악화 등 문제점이 심각, 지방에 우수고 육성 필요성 절실

□ '07년 3월부터 개방형 자율학교(4개교) 시범운영 중
 ○ 새로운 학교운영 모델을 지방을 중심으로 확대 필요

[개방형 자율학교]

- 교과 및 전인교육을 조화롭게 실현하도록 교육방법, 교육과정 운영 혁신
- 교장 : 공모하되, 공모교장에게 협약을 통해 학교운영권 위탁
- 학교운영(교육과정, 교원인사, 예산 등)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
- 학생모집 : 평준화 지역은 선지원 후배정. 비평준화 지역은 협약에 따라 내신, 적성검사, 면접 등 다양한 방법에 의해 모집

□ 농산어촌우수고 : '06년까지 44개 군지역을 대상으로 선정 및 지원하고, '07년에는 전국 모든 미선정 군지역(44개)으로 확대 예정이며 연차적으로 도·농복합시까지 확대 필요

2. 제도개선 내용

□ 혁신도시·기업도시 및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을 중심으로 개방형 자율학교 지정 확대(기 지정학교 4개 포함 총 41개 운영)

* 균형발전 거점도시(혁신도시·기업도시·세종시)에 1교씩 배치(15교)
 지역별 거점도시에 26개 우선 추진

* 수도권 대 지방 학교수('12년) : 수도권 9, 지방 32

□ 혁신·기업도시와 연계하여 특성화 전문계고(25개) 육성

- 2009년부터 지방이전 공공기관 및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하여 11개 시·도에 2개교씩 특성화 전문계고를 육성
-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에 대해 재정지원

□ 농어촌 1군 1우수고교 육성

- 농산어촌(88군, 52도농복합시) 우수고를 '07년 86개에서 연차적으로 140개로 확대 육성
- 이들 고교에 대하여는 어학실, 멀티학습실, 온라인교육 등 유비쿼터스 학습환경을 조성하고 원어민 보조교사, 교육과정 개선 등 지원

1. 현황 및 문제점

- 농산어촌 및 도시 저소득층 대상 아동들에 대한 지원 부족과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하고 질 높은 방과후 프로그램 부족
 -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고, 도·농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방과후학교의 교육품질 향상이 선행되어야 함

※ '06 : 방과후 학교 참여율(41.9%), 방과후학교 만족도(65%)

- 또한 지방의 초·중등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충원율이 수도권에 비하여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수도권과 지방의 교육격차 해소의 필요성 제기

※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충원율('07.4월) : 수도권 41.2%, 지방 27.6%

2. 제도개선 내용

-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및 저소득층 지원확대를 통한 방과후 학교 활동의 참여율 제고 ('10년까지 60% 수준 달성)

※ 목표 : '10년까지 학생 참여율 60%, 만족도 80으로 상향

연도	2005	2006 현재	2007	2008	2009	2010
참여율(%)	34.0	41.9	45.0	50.0	55.0	60.0
만족도	54	65	68	72	76	80

- 농산어촌 방과후학교에 외부 강사비, 프로그램 운영비, 통학 버스 운영비 등 지원하고 거점학교 중심의 방과후 학교를 공동운영

* '07년 88개군에서 '10년 140개 시·군으로 방과후학교 활동 지원 확대

○ 도시 저소득층 바우처(수강권) 지원

*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30만명에 대한 지원을 '10년 45만명까지 확대

□ 프로그램의 다양성·전문성 강화를 통한 수요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프로그램 위탁 및 우수프로그램 개발·보급

○ 창의적인 지역 밀착형 우수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지원

○ 프로그램 다양화·전문화를 위해 프로그램 위탁 운영 확대
· 시범학교(475개)를 통해 다양한 위탁 모델 개발, 확산

□ 지방 초·중학교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충원율을 획기적으로 제고

○ 지방 우선 집중 투자로 현재 27.6%로의 영어보조교사 충원율을 2012년까지 50%로 확대

○ 영어거점 초등학교를 지정하여 유휴교실을 리모델링하고 원어민 강사를 집중 배치하여 영어 프로그램 상시적 운영

가. 이공계장학금의 지방대학 지원비중 확대

1. 현황 및 문제점

□ '03년부터 이공계 국가장학생을 매년 4,000명씩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

* 정시(대학수학능력시험) 및 수시입학(내신 등) 등을 통해 이공계대학에 진학한 우수학생에게 4년간 장학금 지원

□ 그러나, 지방대학은 이공계 국가장학생으로 선정되는 비율 (49%)이 낮아, 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 고착화 문제 발생

2. 제도개선 내용

□ 비수도권 이공계대학 진학 우수학생 2,000여명을 매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지역대학 우수학생 지원 제도 도입

• 지급대상 : 비수도권 이공계대학 진학생중 수리과학 3등급 이내 학생

□ 이를 통해, 이공계 국가장학생 전체 수혜인원중 지방비율을 65% 수준까지 확대

나. 지방대학 인문계장학금 신설

1. 현황 및 문제점

□ 현재 정부의 다양한 장학사업 전개에도 불구하고, 지방대학 인문사회계열 우수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없음

* 누리, BK21사업 등은 참여학생 대부분이 이공계 지원사업으로 수혜자가 이공계에 치중

□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지방 우수대학생의 지역대학 진학 촉진과 지방 혁신리더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필요

2. 제도개선 내용

□ 지방대학 인문계열 신입생 및 재학생 중 우수학생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원

○ 전체 137개 4년제 대학의 2,210명 수혜(대학당 평균 16명)

- 단, 전체장학생 중 30%를 저소득층 학생에게 배정

○ 장학생 지급조건

- 대상 : 비수도권 대학 인문계열(인문·사회·교육) 학생

- 지원조건 : 수능 및 대학입학 성적 우수학생을 선발하여 재학기간 중 전액 장학금 지원

다. 지방전문대생 장학금

□ 지방전문대학 진학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제도를 신설

○ 지방전문대학의 저소득층 진학생중 성적우수자 2천여명에게 전문대학 등록금의 80% 지원

* 저소득층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은 교육부 「고등교육의 전략적 발전 방안」(07.6.26 발표)과 연계하여 추진

II-9 지방대학의 학생전용 임대주택 제도 도입

1. 현황

- 국립대의 경우 기추진중인 BTL사업으로 기숙사의 학생 수용율을 2010년 21.6%의 목표로 추진중
- 사립대 기숙사의 경우 지원책이 미흡, 학생수용율이 15.8%에 불과
 - * 현재 사립대 기숙사 건립은 사학진흥기금에서 융자(4% 수준) 지원

2. 추진방향

- 사립대학생 전용 임대주택을 20호 이상 건설시,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지원조건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

《 지원조건 》

- ▷ 전용면적 60㎡ 이하 : 호당 55백만원 한도, 연리 3%
상환기간 : 10년거치 20년 상환
- ▷ 전용면적 60~85㎡ 이하 : 호당 75백만원 한도, 연리 4%
상환기간 : 10년거치 20년 상환

- 기숙사 및 학생전용 임대주택건설시 주택건설기준·공급방법 관련 규제완화 및 부담금 경감
 - 주차대수 완화, 놀이터·노인정 등 설치 적용배제 등 건설기준 등 완화
 - 청약제도와 관계없이(유주택자 포함) 학생에게 임대
 - 공공임대주택(기금지원주택)으로 규정하여 기반시설 부담금 면제

1. 현황 및 문제점

□ 현재 대학기부금은 소득한도내(개인 100%, 법인 75%)에서 기부금 전액을 소득공제하는 혜택을 부여

* 학술·장학·종교·예술·문화 등 일반 비영리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소득의 일정한도내에서만 소득공제 (개인 10%, 법인 5%)

□ 그러나 대학기부금의 대부분이 수도권대학에 집중되고 지방대학의 수혜 비중은 미미한 상황

* 대학기부금 1.3조원('05년 기준) 중 수도권대학이 71%를 차지

2. 제도개선 내용

□ 기업이 지방대학에게 지급하는 맞춤형 교육비용¹⁾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²⁾ 대상에 포함

1) 기업과 교육기관간 계약에 의해 채용을 조건으로 설치·운영되는 직업교육 훈련과정, 학과등의 운영비로 지출하는 금액

2) 세액공제율=Max(①,②), 대기업은 ②만 허용

① 당해연도 지출액 × 15%

②(당해년도 지출액-직전 4년평균지출액) × 50% (대기업은 40%)

□ 기업이 지방대학에게 기부하는 연구개발 설비를 연구개발 설비투자세액공제* 대상에 포함

* 투자금액의 7%를 소득·법인세에서 공제

1. 현황 및 문제점

□ 국가출연연구기관과 지방대학간 포괄적 교류협력이 미흡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지적 싱크탱크(Think-tank) 기반 미흡

○ 국가출연연구기관과 지방대학간 포괄적 협력을 통해 인력 교류, 우수연구인력 활용기반 구축 필요

※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소 : 한국과학기술연구원, 한국전자통신연구원,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19개

2. 제도개선 내용

□ 국가출연연구기관-지방대학-산업체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발전의 중추적 싱크탱크 역할 수행

○ 출연연구기관의 핵심연구 성과와 지방대 연구 공유를 통해 지역산업 육성

○ 인적교류 제도화, 맞춤형 교육, 연구성과 DB 구축을 통한 정보 공유 등을 주요 협력사업으로 추진

* 출연연-지방대학-기업체 연계 시스템 구축

○ 지방대학 또는 출연연구기관 주관으로 「전략적 제휴」에 대한 공모사업 추진

- 출연연-지방대-산업체간 포괄적 업무협정을 체결하여 추진

* 일정기간(예 : 3년)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목표 미달사업 지원 중단

1. 필요성

- 수도권에 비하여 현격하게 뒤떨어진 지방대학 연구 역량 및 교육력 제고를 위하여 지방대학 특화 분야에 집중 투자 필요
- 학부와 대학원간 연계를 통해 지방대 연구인력 확보가 절실
 - 지방대 졸업 후 수도권 대학원에 진학함으로써 지방대 연구인력 부족 → 핵심 인력이탈, 연구력 저하

2. 추진계획

- 지방대학 특화분야 육성을 위한 특성화 「사업단」 지원
 - 수도권에 비해 현격하게 뒤떨어진 지방대 연구역량 제고를 위해 지방대 특화사업분야에 집중 투자
 - 국가, 지자체, 민간 수요를 반영한 산학연 협동연구체계 구축
 - 지방대학을 대상으로 특성화 「사업단」 공모사업 추진
 - * 지방대학·정부(필요시 지자체·민간기업)간 성과목표 협약 체결
 - 사업규모 : 40여개 사업단(이공계 25, 인문사회계 15)
 - * 13개 권역별 1개이상 사업단이 구성될 수 있도록 지원
 - 지원분야
 - 국가수요(70%) : 10대 성장동력사업, 21개 서비스분야, 지역전략산업
 - 대학자체 수요(30%) : 지역특화 및 균형발전 인문사회분야 등
 - * 국내우수학생 유치, 우수외국 Inbound 유학생 및 교원 유치, 수도권 대학과 교류 지원

II-13 지방국립대병원을 3차 전문·특화의료기관으로 육성

1. 현황 및 문제점

□ 현재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는 대형병원으로 인해 지방 환자들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화되고 있음

□ 지방 국립대병원은 정부지원이 미흡하여 3차 의료기관으로서 역할·기능이 서울의 3차병원에 지속적으로 저하되는 실정

* 지방 국립대병원 : 부산, 강원, 충북, 충남, 경북, 경남(경상), 전북, 전남, 제주

2. 제도개선 내용

□ 지방 국립대병원을 지역주민이 믿고 찾을 수 있는 특화·전문 3차 의료기관(서울대병원 수준)으로 육성

▪ 9개 광역단위의 지방 국립대학병원에 전문질환(류마티스, 파킨슨병 등) 별로 특화분야를 지정하여 전문질환관리센터 설치

▪ 지방 국립대학병원별 집중치료실(중환자실) 특화, 서울의 종합전문 요양기관(삼성·아산병원 등) 수준으로 개선

* 심장질환, 뇌졸중, 외과 및 내과질환계 등 집중질환센터 특화 지원 강화

▪ 저출산 대비 등을 위해 신생아집중치료실에 대한 의료인력, 시설·장비 및 운영비 등 지원 강화

□ 국민들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, 심·뇌혈관 질환에 대해 광역단위에서 완벽한 의료서비스 제공 추진

▪ 지방 국립대병원의 지역암센터에 최고 수준의 첨단의료장비 지원으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지역 최고의 암 연구·치료기관으로 육성

* 지역 암센터에 Tomo-therapy, 선형가속기, Cyber Knife, 세기조절방사선치료 (IMRT) 등 장비 등을 지원하여 첨단 암 진료장비의 지역적 불균형에 따른 환자의 서울 집중 해소

▪ 권역별 심·뇌혈관질환 관리센터 설치·운영으로 권역내 심·뇌혈관질환자에 대한 질 높은 전문의료 서비스 제공

* 기존 응급의료센터의 기증을 심·뇌혈관 응급치료에 적합하도록 전문화하고 24시간 전문의 상주 및 병원 도착후 30분 이내에 진단·처치 완료하고 지방 국립대병원에 심·뇌혈관질환 집중치료실을 설치 종합적인 One-stop 진료 제공

□ 지방 국립대학원 등 중장기적 혁신적 연구기반 조성

▪ 지방 국립대학병원에 생물자원 지역 거점은행 운영, 지방 소재 대학의 연구 활성화, 다국가 임상시험 유치로 외화 획득 및 신약개발 기술습득 등에 대한 R&D 지원

* 지방대학 특화 육성과 연계하여 R&D 예산 중점 지원

▪ 지방 국립대병원의 지속적인 특화·정보화 관리

* 지방 국립대병원의 발전을 위해 발전위원회 구성·운영 및 병원정보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선진의료환경 구축

Ⅱ-14 지방의료원을 2차 지역거점공공의료기관으로 육성

1. 현황 및 문제점

- 고령화,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일반진료 외에 재활, 장기요양, 호스피스 완화 의료 등 포괄적 의료서비스 요구 증대
- 지역사회에서 포괄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지방의료원은 시설·장비 등이 현저히 낙후되어 있고, 전문의료서비스 요구 충족을 위한 기반시설도 부족

2. 제도개선 내용

-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민간부문과 차별화된 영역에서 의료서비스 기능을 확대
 - 민간부문이 기피하는 재활, 요양, 만성질환 관리 등 새로운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
- 공공의료 기능 확대를 위한 지방의료원 현대화 지원
 - 건물이 노후하여 외부경관이 열악하고, 편의시설이 부족하거나 불편한 지방의료원의 시설·장비 개선
 - 혁신·기업도시 등 지역발전 거점지역의 지방의료원 리모델링, 신축·이전 등 현대화도 집중 지원
 - * 지역(보건소)-지역거점병원(지방의료원)-광역(국립대병원)으로 이어지는 공공 보건의료 전달체계의 연계기능 중점 보강

□ 지역거점 전문의료서비스센터 설치·운영 지원

- 수익성 부족 등으로 민간병원이 제공하기 어려운 재활, 영양, 만성질환관리,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「재활·영양서비스센터」 설치·운영
 - * 심·뇌혈관 등 만성퇴행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, 말기암환자에 체계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호스피스·완화의료 등 중점 지원
- 산부인과, 소아과가 없는 농어촌 지역 주민들을 위해 지방의료원 내에 「출산양육지원센터」를 설치하여 임신·출산·양육관련 전문의료서비스 제공
 - * 산부인과 의료장비, 이동검진차량, 산후조리원 설치 등 지원
- 의료접근성이 부족한 취약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첨단장비를 탑재한 진료차량을 지원하여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
 - * 만성질환(심혈관·신경계), 농어촌 지역 산전·산후 검진 및 관리, 영유아 질병관리, 국립 및 지역암센터와 연계한 암 조기발견 이동검진 등
- 중·소 도시내 부족한 만성 신부전증 환자 진료를 위한 진료시스템(인공신장실) 확충

II-15 지역보건소를 1차 지역의료건강센터로 발전 강화

1. 현황 및 문제점

- 현재 도시지역의 취약계층 밀집지역에 필요한 재활·정신보건 서비스, 재가 요양서비스, 금연, 절주 등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이 미흡한 실정
- 일반 민간의료기관이 제공하지 않는 방문보건서비스, 재활보건, 만성질환관리, 지역사회 연계사업 등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필요
 - 도시지역 시범 보건지소 10개 설치·운영중

2. 제도개선 내용

- 도시지역 저소득층, 거동불편노인, 장애인 등 취약계층 밀집 지역에 대한 보건의료 안전망 구축 및 접근성 보장
 - 특별시·광역시를 제외한 시군구 지역에 도시형 보건기관 신설
- 지역보건소를 지역주민에 대한 1차 보건의료 서비스 및 포괄적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기능 확대
 - (종전) 1차 단순치료 중심의 보건기능
(향후) 방문보건, 재활보건, 만성질환 관리, 건강증진기능까지 포괄하는 종합보건서비스로 전환
 - 정신보건, 재가요양서비스, 금연·절주·영양·비만예방 등 신규 공공의료 서비스 기능까지 확대 제공

1. 현황 및 문제점

□ 질병구조가 만성병 위주로 진행됨에 따라 기존 질병치료 위주 서비스 접근의 한계 노출

-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 등 혼자 사는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방문보건, 영양, 재활 등 보건복지서비스와 건강증진에 대한 수요 증가 예상

2. 제도개선 내용

□ 주민 건강정보 데이터베이스(DB) 구축

- 보건소, 지방의료원, 민간병의원 등을 연계한 등록환자 관리 시스템 및 만성질환관리정보시스템(KMS) 구축
- 치료일정 안내, 방문보건서비스를 통해 주민건강을 체계적 관리
- 응급상황시 전문의료기관과 연계하여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

□ 지역주민에 대한 포괄적인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

- 방문보건센터, 재활치료실, 정신보건센터, 운동지원실 등에 시설·장비 지원

□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 대폭 확대

- '07년 방문보건인력 2,000명 채용(155억원) 등 방문건강관리 인력을 확대 배치하고, '10년까지 단계적으로 5,000명까지 확대

* '07년도 방문건강관리인력 : 간호사 1,664명, 물리치료사 140명, 영양사 47명, 운동관련인력 37명, 기타 45명 등 채용

- 기존 외상환자관리, 만성질환 투약 및 합병증 관리 중심에서 포괄적 서비스* 제공체계로 전환

* 만성질환 투약 및 합병증 관리, 영양 WIC 사업, 건강생활실천사업, 구강위생사업, 재가암 관리사업, 임신·산후 건강관리, 영유아 건강관리, 허약노인 건강관리, 노인 돌보미 바우처사업 대상자 판정, 중증장애인활동보조사업 대상자 판정 등

1. 현황 및 문제점

- 응급의료기관의 불균형 배치로 응급진료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약화 및 지역간 응급의료서비스 격차 심화

※ 전국 50개 응급진료권 중 14개(28%) 지역은 응급의료센터 과잉, 20개(40%) 지역은 과소상태이며, 이중 응급의료센터가 없는 6개 진료권은 해당 진료권 내에서 중증응급환자 진료 곤란(2004. 응급진료권분석결과)

- 의료기반이 취약한 농어촌 지역의 장거리 이송에 따른 인공 호흡기 사용자 등 중증 응급환자 이송·관리 지원체계 강화 필요

2. 제도개선 내용

- 출혈성 쇼크, 호흡부전 등 농어촌 지역의 장거리 응급환자 이송 중 환자상태 집중감시(모니터링) 및 원격진료 등이 가능한 중환자용 구급차(Mobile-ICU) 보급

- 13개 시도의 113개 소방서당 2대씩 총 226대를 구급차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읍·면지역, 응급의료센터 미설치 지역, 원거리 이송 지역에 우선 배치

- 전국을 50개 중진료권으로 구분하여 응급의료센터를 균형 배치하고, 취약지역인 6개 진료권에는 응급센터 신설

- 중증 응급환자 발생 현장에서 **30분 이내**에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센터 적정 배치

* 경북 상주·문경/전북 정읍·고창·부안 등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설치에 따른 초기 투자비용 및 운영비 지원

- 급성심근경색, 뇌졸중, 중증외상 등 3대 중증 응급질환에 대한 전문진료 체계 구축

- 증상 발현부터 적절한 시간내 진료가 응급환자의 예후에 미치는 영향이 높은 급성심근경색, 뇌졸중 및 중증외상환자에게 24시간 원-스톱(One-stop) 응급진료 서비스 제공

* 3대 중증 특성화 응급센터 지정(급성심근경색 24개소, 뇌졸중 24개소, 중증외상 24개소) 및 전문 진료 제공을 위한 운영비 지원

- 심·뇌혈관 질환, 외상환자 등록체계를 구축하여 치료성과 및 진료모니터링 실시

- 응급환자에 대해 중환자용 구급차(Mobile-ICU)를 이용한 30분이내의 진단·처치, 지역특화응급의료센터, 지방 국립대병원의 심·뇌혈관질환센터가 연계되는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

1. 현황

- 현재 의료기관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서벽지 지역 주민, 농어촌 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제도 운영중

* 2006년도에 39백만세대에 대해 4,265억원 경감

- 현재 건강보험료 경감율은 지역발전 정도 및 의료서비스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감면

2. 제도개선 내용

- 지역발전정도가 낮은 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해 건강보험료 기업주 부담분 대폭 감면

가. 지역 선도도시 우수학교 설립

- 개방형 자율학교, 특성화 전문계고의 단계적 지정 확대
 - 혁신·기업도시내 신설학교·인접지역 기존 학교를 개방형 자율학교(15개)로 우선 지정
 - 혁신도시 등 지역거점의 국립공고를 특성화 전문계고(25개)로 육성

나. 문화·예술 등 국립시설 집중 배치

- 「균형발전영향평가」를 통해 문화·예술 등 국립시설을 혁신·기업도시에 배치 유도
 - 신설되는 국립 문화·예술시설은 지방에 배치될 수 있도록 수도권정비법 관련 규정 정비 추진
- 혁신도시 개발계획에 문화·예술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편입하여 개발계획 등 승인

다. 보육·노인복지·의료시설 등 집중 지원

- 혁신·기업도시에 국공립 보육시설, 노인 요양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확충

1. 현황 및 문제점

□ 지방의 총예산 중 사회개발 지출 비중* 비중은 40%대임

* 일반회계 기준, 총예산 중 사회개발부문 예산 비중

- 이에 따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 수요 산정시 사회복지·문화 관련 비중을 상향 조정('06년 31%→ '07년 36.2%)하였으나, 아직 지방의 실제 지출 수준에는 못미치는 실정

2. 제도개선 내용

□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 산정 기준에 사회복지·문화 반영비율 상향 조정

- 2008년 보통교부세 산정시 사회복지·문화 관련 수요 비중을 40%대로 상향 조정

* ('06) 31 → ('07) 36 → ('08) 40%

1. 현황 및 문제점

현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개발계정 재원(지자체 자율편성 재원)은 기본요소와 낙후도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분

○ 기본요소(재정수요) : 인구, 면적

○ 낙후도요소 : 재정력지수, 주민세소득세할, 노령인구비중

* 배분규모 : 2.9조원 수준('07예산)

현행 재원배분시 기본요소와 낙후도요소의 가중치는 40 대 60

○ 지역간 불균형의 조기해소를 위해서는 낙후도요소 가중치 확대 필요

2. 제도개선 내용

재원배분방식 개선을 통해 낙후도요소 반영 강화

○ 낙후도요소 가중치를 현행 60%에서 70%로 확대

* (현행) 기본요소 40, 낙후도요소 60 → (개선) 기본요소 30, 낙후도요소 70

개선된 방식을 통해 '08년 지자체 자율편성재원을 배분('07.5.10)

1. 현황 및 문제점

-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매칭사업비 부담으로 지방 R&D 등 지역혁신사업 추진에 애로
 - 재정력지수 등에 따라 분담비율을 차등화하여 재정력이 취약한 지자체의 매칭사업비 부담 경감 필요
- 현재는 통일된 원칙이나 기준없이 부처별로 매칭비율을 적용
 - 사업유형, 지자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한 기준 마련 필요

2. 제도개선 내용

- '08년 예산안작성 세부지침에 지자체별 또는 지자체 유형별로 차등이 가능토록 규정('07.4월)
- 구체적인 방안은 사업유형, 매칭단위(광역/기초), 지역분류결과의 제도화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 ('07.8~12월)
 - '09년 예산안 편성시 반영

IV. 수도권 발전대책

1. 수도권 정책방향

- 수도권의 과밀 해소,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 개선, 수도권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과거의 양적 팽창에서 벗어나 질적 발전으로 정책방향을 전환
 -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선별적 규제개선
- 수도권 발전 비전 달성을 위한 수도권 발전대책 수립·추진
 - 수도권의 쾌적성과 매력성을 높여 삶의 질 개선
 - 지식혁신 클러스터(cluster) 활성화
 - 글로벌 시티(global city)로서의 도시발전 전략 수립·추진
- 수도권 관리방식을 중장기적으로 「계획적 관리」체제로 전환

2. 중점 추진과제

① 삶의 질 개선

-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역사와 문화공간을 확충
 - 녹지 활용계약제 등을 활용하여 근린공원과 녹지를 확충하고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 개발 추진
 - 용산 민족역사공원 조성, 효창공원의 독립공원화 사업 추진

□ 주택·교통시설 지속 확충

- '06년부터 연간 3천만㎡, 5년간 1억5천만㎡의 공공택지 공급
- 전철 수송분담율을 27.4%('04)에서 '20년까지 40%로 제고
 - 광역전철망 30개 노선, 782km 추가 확충계획
- '02기준 860km인 간선도로 총연장을 '20년까지 1,811km로 확충

② 지식산업 클러스터 활성화

□ 지역별 특성화 전략을 살린 클러스터 활성화

- * (서울시)IT·BT, (경기도) 권역별 특화산업, (인천시) 유비쿼터스-IT 등

□ 대학 또는 대학인근에 Hi-Tech 중심의 지식산업클러스터 조성

- 대학·기업·정부 3자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R&D, 디자인·패션, 디지털콘텐츠 등 수도권 전략산업과 연계·추진

③ 국제화 전략 추진

□ 서울과 인천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다국적기업 지역본부 등을 유치하기 위한 국제업무 및 국제금융지구 조성

□ 인천 경제자유구역을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로 육성

- * (송도) 국제업무 및 IT·BT 등 첨단산업 Hub, (영종) 인천공항 중심의 항공물류 Hub, (청라) 국제금융 및 관광·레저 Hub

④ 수도권 규제의 선별 개선

□ 정비발전지구 제도 도입

- 공공기관 종전부지, 노후 공업지역, 낙후지역 등 대상으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·적용(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중)

□ 미군 반환공역구역 주변지역 및 평택시에 수도권 규제완화 적용

- 주한미군 반환공역구역 주변지역에 지역발전종합계획을 수립·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생활여건 개선
- 미군기지가 이전하는 평택시를 환황해권 국제화중심도시로 육성

3. 수도권 관리체계 개편

□ 행복도시 등 지방화 시책이 가시화되고 지방의 자율관리능력 향상 등 여건이 성숙한 시점에서 「계획적 관리」로 전환

-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정비방안 마련('08초) 등 사전준비 진행